

9.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中改正令

대통령령 제15,471호 1997. 8. 30

주요 골자

-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령 제30조의 2제1항).
-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령 제58조제2항).
-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령 제75조제1항).
-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령 제88조의 6).
-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년간 증가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의 5퍼센트 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령 제89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 8. 30, 법률 제5402호)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기관투자자의 범위)”를“(기관투자자 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 조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투자조합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조합출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기한

② 투자조합관리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과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대의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를 “물품으로”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5 조2(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법 제2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제30조의2의 제목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

자”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자산을 말한다.

제37조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호”로, “인정하는 합병과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을 “인정하는 합병”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를 “금융기관 등이 업무용(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업무용)으로”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을 말

한다”를 “법인을 말하며, 동표중 제14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10.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12.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

제7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과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년”을 각각 “7년”으로 한다.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5 조의5(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5조의3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서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1인 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② 법 제80조의5제1항의 총급여액은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8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

76조의2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⑦ 근로자우대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제2장제9절에 제88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 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제2장제9절에 제8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8 조6(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치원의 원아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2.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3.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

② 법 제9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③ 법 제9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4.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④ 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8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한다.

5. 외국법인

6. 법인외의 자

제8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3조제1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89조제6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9항 본문중 “법 제93조제7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을 “법 제9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으로 “대여액을 말한다.”를 “대여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89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인이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한 후 1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당해 자본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증가된 총자본금액에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본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감소액에 증가된 총자본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 차지하

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본 감소액으로 한다.

⑭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먼저 자본을 감소한 것으로 보고 당해 자본감소액을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제96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3 조(인지세의 면제) ① 법 제11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② 법 제111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0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7호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법 제13조의 3”으로,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도 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인지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던 영세중소사업자로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 3”으로 한다.